

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(제3조의2 관련)

사상구분	기준번호	기 준 내 용
건물, 전상	1-1	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	1-2	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요양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된 전역전의 사망
순직, 공상	2-1	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	2-2	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	2-3	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	2-4	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(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의 매식 포함)
	2-5	영내에서 취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(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 영외 취침포함)
	2-6	공무수행의 착수전, 휴식기간중, 종료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	2-7	출, 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	2-8	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	2-9	전속, 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	2-10	휴가, 외출,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	2-11	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, 체력단련, 사기진작 등의 단체 행동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	1-12	군인, 경찰,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·절도범체포, 인명구조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
2-13	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	
2-14	기타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유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	